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50086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20. 11. 27.
판결 선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385,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6. 14.까지는 연 7.5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3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10. 28.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11. 10. F은행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8.까지, 약정이율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PIX) 금리 + 2.1%,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율 +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를 적용)로 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F은행에 이 사건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348,000,000원을 담보한도액으로 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6. 11.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F은행, 보험가입금액 319,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8.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다만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연체이율을 적용)이다.

라. 이후 F은행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25. F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275,385,10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F은행은 2019. 10. 14. 피고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호)○

피고 C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75,385,1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2019.10.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6.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5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근질권 한도액 내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질권 실행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구상금 채무와 질권 실행에 따른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공동하여 3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275,385,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8. 9.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349조 제1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이 2016. 11. 15.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행으로부터 권리조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상담원이 2016. 11. 17.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한 승낙서 및 반환확약서에 자필 서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위 서류의 기재 내용은 나중에 세입자인 피고 B가 이사 나갈 때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금액을 F은행에 반환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 C이 위 승낙 이후인 2018. 9.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질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보람